

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보고

1 보고 근거

-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- 정관 변경 시, 시장 인가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

2 변경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라,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 삭제
 - 개정 내용: 노동이사 임명 대상기관 기준 변경(정원 100명 이상→정원 300명 이상)
- 총 정원(280명) 내 직군별 정원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정원 운용(15명)
 - 전문직(연구직)정원(△5명) ⇒ 일반직 4급 이하 정원 전환(+5명)
 - ▶ 에너지연구소 폐지에 따라 전문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
 - 운영직 정원 일부(△10명) ⇒ 일반직 4급 이하 정원 전환(+10명)
 - ▶ 公社 신규 업무 수요 대응을 위해 운영직 인력 효율화를 통한 정원 조정

3 주요 내용

- 제10조(임원), 제11조(임기), 제14조의2(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권 등)
: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 삭제
- 직군별 정원 조정

현행				
계	임원	일반직	전문직 (연구직)	운영직
280	4	231	5	40

변경			
계	임원	일반직	운영직
280	4	246	30

4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'25. 12. 29.)
-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③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. 그 외 비상임이사는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 4인을 선임하고, 노동자대표 1인을 선임한다.</p> <p>⑥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	<p>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③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. 그 외 비상임이사는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 4인을 선임한다.</p> <p>⑥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
<p>제11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</p>	<p>제11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
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노동자투표 등
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- ②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다.
- ③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제14조의2(비상임이사의 안전제출권 등)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전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다.
- ③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제14조의2(비상임이사의 안전제출권 등) 비상임이사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전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〈별표2〉 (제16조) 〈개정 2022. 1. 4.〉

정 원 표

(단위:명)

총정원	임원	직 원							
		계	일 반 직					전문 직 (연구 직)	운영 직
			소계	1급	2급	3급	4급 이하		
280	4	276	231	6	10	27	188	5	40

〈신 설〉

〈별표2〉 (제16조) 〈개정 2022. 1. 4.,

2025. 00. 00.〉

정 원 표

(단위:명)

총정원	임원	직 원						
		계	일 반 직					운영직
			소계	1급	2급	3급	4급 이하	
280	4	276	246	6	10	27	203	30

부 칙 (2025. 00. 00.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